

Ⅰ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 제정 이유

동 조례는 민통선북방지역인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조성되는 정착마을 조성과 입주영농대상자 선발 및 운영, 관리에 공정을 기하고자 심의 기구를 구성코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 위원 15명으로 하며,
그 기능은

- 1) 정착마을 조성에 관련한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정착마을 입주자 선발에 관한 사항
- 3) 정착마을 택지분양방법 및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위원회 심의전 사전검토의 실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무 위원회에서 조정·협의토록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였고,

○입주자의 선발을 공개하고 선발기준을

1. 진동면, 군내면, 장단면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자
2. 입주할 주택을 자기 부담으로 건축할 능력이 있는 자
3. 영농을 할 여건을 갖춘 자
4. 신원이 확실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자 등으로 조문화 하였음.

○ 제12조에는 주택용지의 분양시기 및 분양방법, 분양가격이 포함된 분양계획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부칙에 '이 조례는 정착촌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하여 한시조례로 정하였음.

□ 검토의견

○ 장단면, 진동면 등의 700여 가구, 2000여명의 실향민들의 오랜 숙원인 입주영농이 가능토록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진 사업으로

○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이 되는 관계공무원과 군부대, 경찰서 등의 관계자의 직함을 명기하여 분명히 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상위 법령이나 조문체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제2조에서 위원회기능을 정함에 있어 제2호와 제5호에서는 정착마을 입주자 선발에 관한 사항과 택지분양방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입주자선발과 제12조의 분양계획 수립 등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10조와 제12조의 내용중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원회의 기능을 한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신설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제5조 제4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조정·협의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제2호에서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으로 명시하였으나 제2조 위원회 기능에서는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조항이 없음으로 실무위원회와 위원회간의 업무범위가 불분명하여 별도 조문의 추가 또는 개정이 필요시 된다고 사료됨.